의안 번호	제2414호~제2415호

2023. 10. 25.(수) 10:00
제35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
총 2건(개정조례안 2)

의회운영위원회

전문위원 안 광 수

1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14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의회의장(오원석 의원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상태 및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, 의정비 지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,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감액 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)

- (기존) 의정활동비 전액 미지급
- (개정)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60퍼센트 감액(구금 후 3개월까지)
 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80퍼센트 감액(구금 후 3개월 이후)

○ 의원이 출석정지(질서유지 의무 위반 포함) 징계를 받은 경우,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감액 (안 제6조제3항)

- 출석정지 징계 시 50% 감액, 질서유지 의무 위반 시 75% 감액

4. 관련근거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

○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구금상태 및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, 의정비 지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2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15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의회의장(김연수 의원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❍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❍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 상향(안 별표1)

- 폭염 및 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함.
【현행】10만원(명절 20만원) →【개정】15만원(명절 30만원)

❍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여 선물범위 확대(안 별표1)

-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스포츠·문화관람권 등을 통한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행동강령 상의 선물범위를 ‘물품 및 용역상품권’(금액상품권은 제외)에 한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함.

4. 관련근거

○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○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청탁금지법)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의 안 번 호	제2416호 ~ 제2422호

2023. 10. 26.(목) 10:00
제354회 임시회 제1차 행자위

검 토 보 고 서

안건 : 7건(제정조례안 1, 개정조례안 6)

행정자치위원회

전문위원 백 윤 석

1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16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의회의장(차상현 의원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❍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·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❍ 목적 및 정의,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1조~제3조)

❍ 지원대상, 기본계획수립, 실태조사, 지원사업 (안 제4조~제7조)

❍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, 위원회 설치 등(안 제8조~제9조)

❍ 협력체계구축, 비밀준수의 의무, 시행규칙 등(안 제10조~제12조)

4. 관련법령

○「사회보장기본법」

5. 검토의견

○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·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2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17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민원봉사과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「지방재정법」제9조에 따라 명시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5조)

- (현행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까지로 한다.
- (개정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4. 법적근거

❍「지방재정법」제9조(회계의 구분)

❍「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」제31조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3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18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주민복지과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「지방재정법」제9조에 따라 명시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7조)

- (현행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(개정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4. 관련법령

○「지방재정법」제9조(회계의 구분)

○「의료급여법」제7조 (의료급여의 지원)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4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19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상위법인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및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맞게 정비 필요

○ 부칙제정으로 종전의 수탁자에 대한 위탁기간 경과조치 사항 명시

3. 주요내용

○ 이용연령 변경(안 제5조제1항)

- (현행)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
- (개정) 장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

○ 위탁기간 변경(안 제7조제3항)

- (현행)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
- (개정)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하고

○ 부칙제정

(위탁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노인복지관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4. 관련법령

○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4조

○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상위법의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5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20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 명시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5조)

- (현행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(개정)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4. 관련법령

○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

○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및 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」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6 장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21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보건정책과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상위법 「지역보건법」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

3. 주요내용

○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(안 제1조)

- (현행)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
- (개정)「지역보건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제3항

○ 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목 신설(별표)

- 정보 또는 자료 미파기 시 과태료 처분

4. 관련법령

○ 「지역보건법」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7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22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체육사업소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직장운동경기부 임용 및 운영지원 등 전문체육인 육성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제5조(단원의 임용) 제3항 계약연장 조항 구체화

- 계약기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규정
- 감독의 경우 1회 한하여 연장 가능

○ 제14조(단원의 연봉 및 등급) 등급 산정 기준 재정비

- (현행) 연봉기준은 조례, 등급산정은 규정으로 이원화
- (개정) 규정으로 통합

○ 제17조(운영 지원) 제1항 선수단 운영지원 조항 구체화

- 대회출전비, 전지훈련비, 급식비 규정

○ 제19조(훈련) 제2항 운영실정을 반영한 대체휴무 근거 마련

- 휴일 훈련 및 대회 후 대체휴무 지급

4. 관련법령

❍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5. 검토의견

❍ **본 개정조례안**은 직장운동경기부 임용 및 운영지원 등 전문체육인 육성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,

❍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의안 번호	제2423호~제2438호

2023. 10. 27.(금) 10:00
제3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
총 16건(제정조례안 3, 개정조례안 12, 의견청취 1) : 붙임 참조

장성군의회

산업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안광수

1 장성군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23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의회의장(심민섭 부의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·관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목적, 정의,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
○ 정원문화 육성 및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6조)

○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정원문화의 발굴(안 제7조~제9조)

○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주민참여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2조)

○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제14조)

○ 정원관리사 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~제16조)

4. 관련근거

○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○「전라남도 정원·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」

5. 검토의견

○ **본 제정조례안**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·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2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24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의회의장(최미화 의원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군수와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
- 종합시책 수립,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근로환경 조성 노력

○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- 실시계획 수립, 수립시 필요한 기관·단체에 자료 요청

○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-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, 직업교육훈련, 인턴취업, 경력단절 예방 등

○ 업무의 위탁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0조)

-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 운영, 위원회 구성 등

4. 관련근거

○「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」

5. 검토의견

○ **본 제정조례안**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3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25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의회의장(서춘경 의원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○ 군수의 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○ 육성방안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○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○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
4. 관련근거

○「지방재정법」

○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

5. 검토의견

○ **본 제정조례안**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4 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26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일자리경제실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인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 개정(2014. 1. 29.), 제7조의3 개정(2017. 3. 7.)에 따른 관련 조문, 별지를 정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소매인 지정 신청 각 호 및 단서 삭제(안 제2조제1항)

- 제1호 및 제2호 삭제
- 단서 삭제 후 제2항에 추가

○ 소매인 지정 신청 제출서류 신설(안 제2조제2항)

-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신청인 동의 시 해당서류 첨부 면제
- 제2조제1항의 삭제 단서 추가

○ 별지 제1호~4호 서식 수정(법령 개정에 따른 서식 수정)

4. 관련근거

○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조(소매인의 지정절차 등), 제7조의3(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)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상위법령인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별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5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27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일자리경제실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을 상위법* 규정 및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.

*「소상공인기본법」,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상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* 중소벤처기업부에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'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' 공고를 통해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.

3. 주요내용

○ 소상공인 지원제외대상 변경(안 제15조)

- (현행) "이 조례에서 정한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"
- (개정) "이 조례에서 정한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에서 정하는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과 같다"

○ 별표 삭제(안 별표)

4. 관련근거

○「소상공인기본법」

○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)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을 상위법 규정 및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6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28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일자리경제실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인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 반영 및 소상공인 정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가맹점의 자격요건 근거 법령 변경(안 제6조제2항)

- (현행) 법 제7조제4항
- (개정) 법 제7조제5항

○ 소상공인 정의를 위한 근거 법령 변경(안 제6조제2항제2호)

- (현행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(개정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○ 가맹점의 등록 취소 공개 근거 법령 변경(안 제8조제2항)

- (현행) 법 제8조제2항
- (개정) 법 제8조제3항

4. 관련근거

○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5항, 제8조제3항

○「소상공인기본법」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소상공인 정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위한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7 장성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29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일자리경제실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「지방재정법」제9조에 따라 명시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- 1개 기업체 토지분양대금 미납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 연장

3. 주요내용

○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5조)

- 현행 존속기한: 2023년 12월 31일
- 개정 존속기한: 2028년 12월 31일

4. 관련근거

○「지방재정법」제9조(회계의 구분)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8 장성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30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건설과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근거 조항과 잘못 사용된 용어 및 맞춤법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근거 조항 개정

- 제1조(목적) 「도로법」 제31조 및 제76조 → 「도로법」 제35조 및 제91조

○ 용어 및 맞춤법 개정

- 제3조 손궤예방 → 파손 예방
- 조문별 띄어쓰기 변경

4. 관련근거

○「도로법」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근거 조항과 잘못 사용된 용어 및 맞춤법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9 장성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31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건설과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이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에서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, 잘못 사용된 용어 및 맞춤법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근거 조항 개정(안 제2조)

- (현행)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
- (개정)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

○ 용어 및 맞춤법 개정

- 제6조 상이하거나 → 다르거나
- 조문별 띄어쓰기 변경

4. 관련근거

○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, 잘못 사용된 용어 및 맞춤법을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0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32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도시재생과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 사항 반영

○ 개발행위 기준 정비

- 허가 및 개발행위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 반영

○ 그 외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

- 민원봉사과-41428호, 2023. 7. 20. 조례 개정 요청 공문 접수
- 맑은물관리사업소-12300호, 2023. 8. 8.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협조 요청
- 주민의견 청취 대상 범위 확대

3. 주요내용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 사항 반영

- 주민의견청취 방법 명확화(안 제7조제1항)
-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명시(안 제15조의2제2항)
- 비도시지역 개발행위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(안 제27조의2제10호)
- 방재지구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(안 제60조제4항)

○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정비

- 자원순환관련시설 정의 재정립(안 제19조의4제1호다목)

-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등급 미지정에 따른 허가 기준 미적용(안 제20조제1항제4호)
-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분리된 사항을 하나로 정립(안 제20조의3)

○ 그 외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개선

- 주민의견 청취 대상 범위 확대(안 제7조제2항)
-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설치시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20m → 50m 증가(별표)
- 생산녹지지역, 농림지역, 자연취락지구 및 생산관리지역에서 공공하수 처리시설 입지 허용(별표)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건축물의 용도 변경사항 반영(별표)

4. 관련근거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타법의 개정사항과 허가 및 개발행위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 및 그 외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1 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33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도시재생과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다양하게 변화하는 정책과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지속 가능한 조례명으로 제명 변경

○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명확화

- 경관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도시와 건축을 포함한 군계획위원회(공동위원회)로 하여 명확한 기준 확립

○ 타법 개정사항 반영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

3. 주요내용

○ 제명변경

- 「장성군 옐로우시티 경관 조례」 →「장성군 경관 조례」

○ 경관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명확화

- (현행) 장성 군계획위원회(분과위원회 포함)
- (개정) 장성 군계획위원회(공동위원회)

○ 타법 개정사항 반영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다라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하나로 통합(경관지구)된 사항 반영

4. 관련근거

○「경관법」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지속가능한 조례명으로 제명 변경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명확화하고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2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34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도시재생과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「지방재정법」제9조에 따라 명시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4조)

- 현행 존속기한: 2023년 12월 31일
- 개정 존속기한: 2028년 12월 31일

4. 관련근거

○「지방재정법」제9조(회계의 구분)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3 장성역 주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(안) 의견청취의 건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35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도시재생과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청운지하차도 개통시 개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성역 주변의 건축물 체계적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,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(안)에 대해서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공간적 범위

- 위치 :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184-4번지 일원(장성역 주변)
- 면적 : 11,949㎡

○ 주요내용

구 분	세 부 내 용
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	• 위치 : 장성읍 영천리 1184-4번지 일원(장성역 주변) • 면적 : 11,949㎡ • 목적 : 건축물 체계적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와 가로경관 개선
성장관리계획 결정	•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- 진입도로 및 도로개설 주체 등 도로확보 기준(의무) - 주차장 확보 기준(권장)

구 분	세 부 내 용
성장관리계획 결정	• 건축물 용도 및 밀도에 관한 계획(의무) - 권장용도 :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를 제외한 건축물 - 불허용도 : 공장,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, 석유판매소, 액화석유가스 충전소·판매소·저장소 제외) 자원순환관련시설, 묘지관련시설,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- 건폐율 : 30%(권장용도 준수시) - 용적률 : 100% - 높이 : 4층 이하 • 건축물 배치, 형태, 색채 등에 관한 계획(권장)

4. 관련근거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

5. 검토의견

○ **본 의견청취의 건**은 청운지하차도 개통시 개발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성역 주변의 건축물 체계적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**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결정(안)**에 대해서

○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 이행사항임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4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·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36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교통에너지과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공영버스터미널에서 발생하는 특정 수입·지출을 관리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27조)

- 현행 존속기한: 2023년 12월 31일
- 개정 존속기한: 2028년 12월 31일

4. 관련근거

○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

○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 제49조(공영터미널의 설치·운영)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5 장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37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교통에너지과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 공영주차장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5조)

- 현행 존속기한: 2023년 12월 31일
- 개정 존속기한: 2028년 12월 31일

4. 관련근거

○「지방재정법」 제9조(회계의 구분)

○「주차장법」 제21조의2(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)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6 장성군 농어민소득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: 제2438호

○ 제출일자 : 2023. 10. 12.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농업축산과장)

○ 회부일자 : 2023. 10. 13.

2. 제안이유

○「지방재정법」제9조에 따라 명시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제14조의2)

- 현행 존속기한: 2023년 12월 31일
- 개정 존속기한: 2028년 12월 31일

4. 관련근거

○「지방재정법」제9조(회계의 구분)

5. 검토의견

○ **본 개정조례안**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하여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,

○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